

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3. 제안이유

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휴직에 따른 직권면직규정 보완
-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
- 근무상한연령 단축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(법률 제5568호, '98. 9. 19) 됨에 따라 본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공무원 정년이 1년씩 단축됨에 따라 58세에서 57세로 하였고 휴직에 있어서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하던 것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
- 또한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

-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